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문자 표기시 한글 병기(併記) 의무화〉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95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외국문자 표기시 한글 병기(併記) 의무화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준호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5.
3. 회부연월일 : 2024.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옥외물광고법 시행령상에는 간판 등 옥외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만일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併記)하도록 하여 한글을 보존하고 선양하는 사회 문화를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2019년 한글문화연대가 12개 자치구 간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글 표기 실태에 따르면 전체가 외국 문자인 간판은 23.5%를 차지할 정도로 간판 등의 한글 표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어를 보존하고 선양해야 할 국가적 책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임.

현행법은 건물 3층 이하에 설치되는 크기 5제곱미터(m^2) 이하 간판들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가 없으나, 건물 4층 이상에 크기 5제곱미터(m^2)가 넘는 간판이 외국어로만 표기돼 있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음. 이는 한글 표시 위반

정도로 기소를 위한 고발 등의 행정 행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판 등 광고물에 대해서는 건물 층수나 크기와 관계없이 외국어로만 표기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간판의 종류와 층수는 완화하되 처벌의 수위를 낮춰 한글 표기 의무 제도의 효율성은 높이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간판의 한글 표시가 정착될 수 있게 유도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제1호 개정).

Ⅲ. 검토의견

1. 외국문자 표기시 한글 병기(併記) 의무화

개정안은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併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및 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 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	제3조의3(광고물의 표시기준) 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併記)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 ----- ----- ----- -----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 -----

현행	개정안
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 ⑨ (생략)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 5. (생략) ② · ③ (생략)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 ① ----- ----- ----- 1.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3조의3을----- ----- 1의2.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에서는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제3조제3항)1),

대통령령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併記)하도록 하고 있음(「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2).

이를 위반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제10조제1항)3),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제10조의3)4),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제20조제1항제1호)5).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⑩ (생략)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생략)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併記)하여야 한다.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문자만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⁶⁾,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외국문자만으로 표시한 개개의 광고물등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실제 법 적용과정에서 침익적 처분인 이행강제금·과태료 등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⁷⁾⁸⁾

건물 3층 이하에 설치되는 크기 5m² 미만의 간판들은 허가·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한글 병기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광고물등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는 이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여,

외국문자만을 사용한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실효적으로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 5. (생략)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생략)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併記)하여야 한다.

7) 법제처에서도 이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린 바 있음(광고물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2412, 2016. 8. 3.)

8) “간판도, 메뉴판도, 표지판도 ‘외국어’...불법이지만 처벌은 어려워, 조선비즈, 2022. 5. 27.

이루어지게끔 함으로써 외국문자만을 사용한 광고물등의 신규 설치를 줄이고,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 등도 광고물등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가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바⁹⁾, 개정안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인 광고물등의 가독성 향상과 사업자 등의 자유 제한 간에 비교형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문자만을 표시한 광고물등의 경우, 한글과 병기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법한 광고물로 과태료 등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나,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법률 문구만으로는 예측이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특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한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중 하나인 광고물등의 문자에 관한 사항만을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의 방식 외에,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등 허가·신고의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각각 규정(시행령 제4조부터 제

9) 헌법은 제2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 ... 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바, **광고물**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 또한, **사업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서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상업광고를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도 동시에 제한하게 된다.**(헌재 2012. 2. 23, 2009헌마318 중 인용)

20조까지)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법령의 적용에 있어 모호성이 지적되고 있는 시행령상의 ‘한글과 병기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위법한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태료 등을 **실효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입법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336